

의안번호	2200274
의 퇴 인	전재수의원
회 답 일	2024. 08. 08.
추 계 번호	24D06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유가족에게 의료지원 및 보훈재가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101억 7,900만원(연평균 20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의료지원	1,663	1,750	1,841	1,938	2,040	9,231	1,846
보훈재가서비스	136	159	185	216	251	948	190
합계	1,799	1,909	2,026	2,154	2,291	10,179	2,0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 (진료)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진료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제1항, 제2항, 제3항)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그 외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음(제4항) 민주유공자의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13조 (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5조 (양로지원)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민주화운동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안 제16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부모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2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3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 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구역 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 (진료)	○	—												
2	안 제13조 (의학적 재활 등)	—	• 미대상 — 현행 사업 예산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 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종합재활체육관리시설운영</td><td>2,343</td><td>2,343</td><td>3,223</td></tr> </tbody> </table>	현행 사업명	2022	2023	2024	종합재활체육관리시설운영	2,343	2,343	3,223				
현행 사업명	2022	2023	2024												
종합재활체육관리시설운영	2,343	2,343	3,223												
3	안 제15조 (양로지원)	—	• 미대상 — 현행 사업 예산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 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td><td>7,404</td><td>9,081</td><td>7,694</td></tr> <tr> <td>— 보훈원 양로지원</td><td>3,417</td><td>3,417</td><td>3,417</td></tr> </tbody> </table>	현행 사업명	2022	2023	2024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7,404	9,081	7,694	— 보훈원 양로지원	3,417	3,417	3,417
현행 사업명	2022	2023	2024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7,404	9,081	7,694												
— 보훈원 양로지원	3,417	3,417	3,417												
4	안 제16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 5·18민주유공자 전체 대상자 수 3,579명 중 요양지원 인원은 2~3명 정도이며, 요양지원 단가는 2024년 기준 91만원으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5	안 제20조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	—												
6	안 제22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	동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기준이 현 시점에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내용에 동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7	안 제23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되거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에 대해 의료지원, 의학적재활, 양로지원, 요

양지원, 보훈재가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제정안의 지원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 수 추세 및 유가족 수, 의료지원 등 관련 자료 부재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관련 자료를 적용하여 추정함
-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진료(안 제12조)

(1) 대상인원

-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부상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유가족 수는 자료가 부재하여 5·18민주유공자의 본인 대비 유가족 비율(3.9배)을 고려하여 추정

[표 2] 민주유공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 12.				2024. 6.			
	본 인		유가족	합계	본 인		유가족	합계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민주화운동	136	693	3,233	4,062	136	693	3,233	4,062
부마민주항쟁	1	81	320	402	1	96	378	475
합 계	137	774	3,553	4,464	137	789	3,611	4,537

주: 유가족 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본인 비율(3.9배)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국가보훈부

□ 5·18민주유공자 대상별 의료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5·18민주유공자 대상별 의료지원 현황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훈 병원	전체 등록인원	4,410	4,406	4,417	4,484	4,481	22,198	4,440	0.4
	부상자	등록인원	2,263	2,229	2,185	2,166	10,962	2,192	-1.6
		진료인원	19,014	17,334	17,614	16,609	87,868	17,574	-2.3
		진료인원계수	8.4	7.8	8.1	7.7	8.0	8.0	
	그 외 대상자	등록인원	2,147	2,177	2,232	2,318	11,236	2,247	2.4
		진료인원	4,007	3,765	3,851	3,487	18,705	3,741	-2.7
		진료인원계수	1.9	1.7	1.7	1.5	1.7	1.7	
위탁 병원	전체 등록인원	4,410	4,406	4,417	4,484	4,481	22,198	4,440	0.4
	부상자	등록인원	2,263	2,229	2,185	2,166	10,962	2,192	-1.6
		진료인원	3,749	3,303	2,984	2,931	16,094	3,219	-4.4
		진료인원계수	1.7	1.5	1.4	1.4	1.5	1.5	
	그 외 대상자	등록인원	2,147	2,177	2,232	2,318	11,236	2,247	2.4
		진료인원	-	-	-	-	-	-	-
		진료인원계수	-	-	-	-	-	-	-

주: 진료인원계수는 진료인원/등록인원으로 계산하며, 5·18민주유공자 유가족은 위탁병원 진료 지원대상이 아님

자료: 국가보훈부

□ 제정안의 보훈병원 의료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배우자,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유족 1명이며, 위탁병원은 부상자 본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함

- 부상자는 2024년 기준 부상자 789명에 5·18 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등록인원 연평균 증가율 -1.6% 적용
- 그 외 대상자는 배우자와 선순위유족으로 1명으로 구성되는데, 배우자는 2024년 기준 부상자 789명에 5·18 유공자의 유배우자비율(81.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선순위유족은 2024년 기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인원 137명당 각 1명씩 있는 것으로 가정
- 위탁병원 진료는 민주화운동 부상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유족은 진료대상이 아님
- 진료인원계수는 5·18유공자의 5년 평균 등록인원과 진료인원 비율을 적용

[표 4] 의료지원 대상 추정: 2026~2030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훈 병원	부상자	대상자	763	751	739	727	715
		진료인원(대상자×진료인원계수)	6,121	6,021	5,923	5,827	5,732
	그 외	대상자	819	839	859	880	901
		진료인원(대상자×진료인원계수)	1,364	1,396	1,430	1,465	1,500
	전체 대상자		1,582	1,590	1,598	1,607	1,616
위탁 병원	부상자	대상자	763	751	739	727	715
		진료인원(대상자×진료인원계수)	1,121	1,103	1,085	1,067	1,050
	그 외	대상자	—	—	—	—	—
		진료인원(대상자×진료인원계수)	—	—	—	—	—
	전체 대상자		763	751	739	727	7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진료단가

□ 5·18민주유공자 대상별 진료1회당 진료단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 5·18민주유공자 진료단가 현황

(단위: 백만원,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평균	연평균 증가율
보훈 병원	의료비 (백만원)	부상자	3,023	2,966	2,880	2,997	3,561	15,427	3,085	4.2
		그 외	97	110	123	86	116	532	106	4.6
	진료단가 (천원)	부상자	159	171	164	180	206	—	—	6.7
		그 외	24	29	32	25	32	—	—	7.4
위탁 병원	의료비 (백만원)	부상자	141	159	152	161	167	780	156	4.5
		그 외	—	—	—	—	—	—	—	—
	진료단가 (천원)	부상자	37	48	51	55	54	—	—	9.3
		그 외	—	—	—	—	—	—	—	—

주: 진료단가는 전체의료비를 진료인원으로 나눈 값임

자료: 국가보훈부

□ 5·18민주유공자의 대상별 진료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민주유공자 진료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민주유공자 진료단가 추정:2026~2030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부상자	250	267	284	303	324	6.7
	그외	40	43	46	50	53	7.4
위탁병원	부상자	70	76	84	91	100	9.3
	그외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제정안의 민주유공자 추정 진료인원([표 4])과 추정 진료단가([표 6])를 곱하여 산정한 의료지원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92억 3,100만원으로 추계

[표 7] 민주유공자 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훈병원	부상자	1,530	1,605	1,684	1,768	1,855	8,442
	그외	55	60	66	73	80	333
위탁병원	부상자	78	84	91	98	105	456
	그외	-	-	-	-	-	-
합계		1,663	1,750	1,841	1,938	2,040	9,2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훈재가서비스(안 제20조)

(1) 대상인원

- 5·18민주유공자 보훈재가서비스 대상자 중 보훈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0.56%임

[표 8] 5·18민주유공자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5·18 민주유공자 대상자 수	4,410	4,406	4,417	4,484	4,482	0.4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18	18	22	21	25	8.6
보훈재가서비스 이용비율	0.41	0.41	0.50	0.47	0.56	8.1

자료: 국가보훈부

- 5·18민주유공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민주유공자 유가족 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을 산정하여 민주유공자 유가족 중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9] 민주유공자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수 추정: 2026~2030

(단위: 명,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유가족 수	4,436	4,454	4,472	4,490	4,508	0.4
보훈재가서비스 이용비율	0.71	0.76	0.82	0.89	0.96	8.1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수	31	34	37	40	43	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원단가

- 보훈재가서비스 지원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0] 보훈재가서비스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원단가	2,664	2,735	2,728	3,235	3,532	7.3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재가서비스 지원단가 연평균증가율 7.3%를 적용하여, 민주유공자 보훈재가서비스 지원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1] 보훈재가서비스 지원단가 추정: 2026~2030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지원단가	4,365	4,683	5,025	5,393	5,786	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민주유공자 보훈재가서비스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9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보훈재가서비스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이용자 수	31	34	37	40	43	186
지원단가	4,365	4,683	5,025	5,393	5,786	-
추가재정소요	136	159	185	216	251	9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유가족에게 의료지원 및 보훈재가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101억 7,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6~20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의료지원	1,663	1,750	1,841	1,938	2,040	9,231
보훈재가서비스	136	159	185	216	251	948
합계	1,799	1,909	2,026	2,154	2,291	10,1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민주유공자 유가족의 진료횟수나 진료단가,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실제 민주유공자 유가족의 진료 횟수, 진료단가, 보훈재가서비스 이용현황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